2015년 1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월 11일(일) 0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기청 정책총괄과 이준희 과장(042-481-4537), 김종길 주무관(8913)

「범용 중소기업확인서」 발급서비스 최초 시행

□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**"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"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정(1966년) 이후 처음으로 발급**된다.

○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, 확인서 출력까지 **발급 전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**도 가능해 진다.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**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개시**한다고 밝혔다.

○ 그동안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**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**이 가능했으며,

- 확인서 갱신 시기인 3~4월에 신청이 집중되어 **발급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**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.

* 확인서 발급건수 : ('11) 19,725 → ('12) 26,655 → ('13) 47,870 → ('14) 75,171

○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, **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**함이 있어 왔으며,

- **지원기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**으로 확인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.

□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로 인해 **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확인 관련 부담을 크게 줄일** 수 있게 되었다.

① 먼저, 중소기업자금 대출,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제와 같이 50여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, **복잡한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던 것을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**할 수 있게 되었다.

- 특히, **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**이므로 한번 발급받은 확인서는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.

② 확인서 신청서류의 제출방식이 **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변경**됨에 따라 신청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**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** 수 있다.

- **지원기관**도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으로부터 **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온라인 상에서 확인서 발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확인업무가 간소화**된다.

□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**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smba.go.kr)'에 회원가입**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**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**하다.

○ 한편,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도 확인서를 신청하면 **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**받을 수 있다.

<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>

회원가입	▪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smba.go.kr)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
⇩	
자료제출	▪ 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서류 온라인 전송
⇩	
신청서 작성	▪ 기업개요 및 주주·출자현황, 상시근로자 제외인원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
⇩	
확인서 발급	▪ 자료제출이 완료된 경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확인서 출력가능 ▪ 지원시책기관은 확인서 발급정보 조회가능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종길 주무관(☎ 042-481-89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